

『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』 신산업 책임보험 지원 모집공고

중소벤처기업부, 충청북도, 청주시가 지원하는 ‘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육성’과 관련하여 첨단재생바이오 실증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인적·물적 손해 배상을 위한 ‘신산업 책임보험’의 수요기업(병원 등)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6년 10월

중소벤처기업부장관, 충청북도지사, 청주시장, (재)충북테크노파크원장

I 개요

- 공 고 명 : 신산업 책임보험 지원 모집공고
- 목 적 : 첨단재생바이오 분야 강점을 지닌 일본 기업과의 협력 구조를 마련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기술 역량 강화 및 산업 육성
- 지원대상 :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특구사업자로 지정 및 실증특례확인서를 보유한 자로서 국내 임상연구 착수 예정자
※ 공고일 기준 특구사업자 지정 必

■ 지원규모

No	지원분야	지원대상	지원금
1	신산업 책임보험	특구사업자 중 국내 실증 착수 예정자	최대 6.3백만원 이내/기업당

※ 민간부담은 정부지원금의 12% 이상(현금 100%) 매칭 필수

II 지원내용 및 추진절차

1) 신산업 책임보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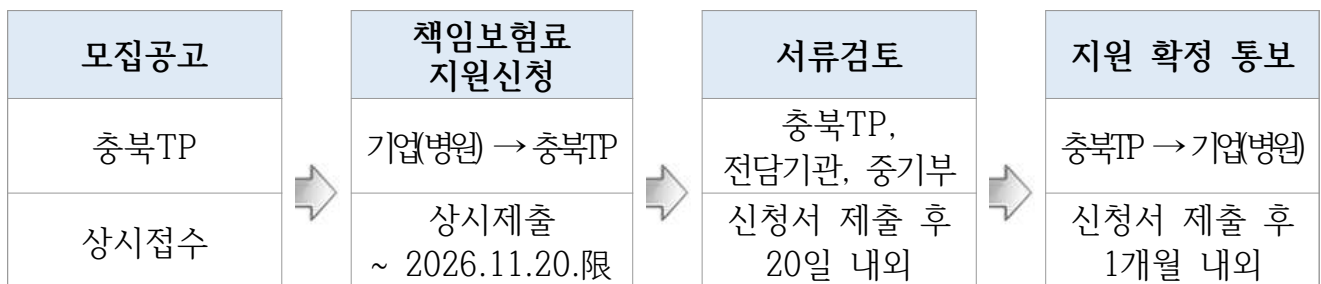
- 지원내용 : 2026.1.1.~11.20. 가입을 완료한 책임보험 가입료 최대 6.3백만원
- (개요) 특례와 관련된 국내 실증 개시 이전에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·물적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보험 가입 필수, 이에 대한 책임보험료 지원

■ 법적 보상한도 : 대인 1.8억원, 사고당 10억원 적용

■ 보험 가입기간 : 실증 개시일 전부터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만료일 이후

- ※ 지역특구법 제88조제2항, 제90조제14항, 제143조제1항의2(과태료), 동법 시행령 제60조, 제61조 책임보험을 1년 단위로 가입 시 갱신하여 실증특례 만료일까지 보험 유지 필요
- ※ 보험금 보상 한도를 초과하여 추가 부담금 발생 시에는 해당 특구사업자가 전액 부담
- ※ 실증특례·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 임의로 책임보험을 해지하는 경우, 사고 책임은 100% 특구사업자에게 있으며, 특구사업자에게 지급한 보험료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

■ 지원절차 : 제출서류 기반 서류 검토를 거쳐 지원확정 통보 후 지원금 지급



○ (제출서류)

No	제출서류	제출형태	비고
1	신산업 책임보험 지원 신청서	PDF/한글	서식1
2	책임보험 증권 및 책임보험료 완납 증명서	PDF	관련 증명서
3	사업등록증명원, 법인등기부등본, 통장사본	PDF	
4	재무제표(최근 3개년) 외감법인의 경우 외부감사보고서도 추가 제출	PDF	국세청 홈텍스
5	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	PDF	
6	기업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조회 동의서	PDF	서식2
7	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PDF	서식3
8	청렴이행서약서	PDF	서식4
9	기업 성과분석 정보제공 동의서	PDF	서식5
10	글로벌 혁신특구 사업자 이전 협약서	PDF	서식6
11	지원사업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	PDF	서식7

※ '외부기관 발급서류'는 신청서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준수

※ 특구사업자별로 책임보험 증권을 확인하고 지역특구법에 따른 보상한도에 부합한지 검토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기간, 약관 등의 적절성 여부 확인 후 가입 必

■ 신청자격

가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

○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특구사업자

- 공고일 기준 특구사업자로 지정되어 있으며, 실증특례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
- 결과보고서 : 충북 글로벌 혁신특구 지역으로 이전 완료 내용 포함

나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한

- 휴·폐업 중인 기업
- 국세·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
-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. 다만,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(인)은 참여 가능
-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·공공기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*
* 동일 대표자,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가 동일한 경우 등
- 국가계약법, 지방계약법 등의 위반으로 인해 부정당제재정보공개 중인 경우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해외사업 부정당업자로 등록 또는 통보된 기업
-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 :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

업종 분류	산업분류코드 (KSIC)	지원제외 업종
제조업	33402 中	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
	33409 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도매 및 소매업	46102 中	담배 중개업
	46~47 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,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, 주류, 담배 소매업
	46331, 3	주류, 담배 도매업
	47859 中	성인용품 판매점
	47993 中	다단계 방문판매
숙박 및 음식점업	5621	주점업
정보통신업	58 中	경마, 경륜,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,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	59142	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
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	9124	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	91291	무도장 운영업

*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,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

■ 접수방법

- 접수기간 : 공고일 ~ 2026. 11. 20.(금)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
- 접 수 처 : (28116)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 40
충북테크노파크 본부관 203호, 기업지원단 글로벌사업화팀
- 문 의 처 : 이태형 선임연구원(043-270-2276, thlee@cbtp.or.kr)
- 신청방법 (※ 담당자 이메일 접수 후 오프라인 접수 必)
 - (온라인) 충북TP 담당자 이메일 접수(thlee@cbtp.or.kr)
 - (오프라인) 충북TP 본부관 2층 기업지원단 방문 또는 우편 접수

V

유의사항

- 과제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충북테크노파크 자체기준에 의거 평가 및 심사하고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(평가결과 개별통보)
- 지원기업의 경우 과제지원을 통한 성과분석·관리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5년 간 성과 모니터링에 참여해야함
- 본 공고내용에 포함된 제공사항 외에 별도 추가사항은 선정기업에서 부담함
-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문의사항은 문의처로 연락바람
-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사항에 대하여 수정·보완요청이 있을 시 응하여야 함
- 다음의 경우 선정 이후 지원중단과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할 수 있음
 -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사용이 확인된 경우
 -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
 - 제출서류가 위/변조 혹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
 - 사업 추진이 불성실 등 원활하지 않은 경우

붙임 : 충북 글로벌 혁신특구 과제지원 제출서류 1부. 끝.

사업신청, 용역, 구매, 공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, 향응을 요구할 경우에는 (재)충북테크노파크 감사팀(043-270-2950~2) 또는 홈페이지 부패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신고자는 부패방지 관련 법률 등에 의거 신분비밀보장을 받게 됩니다.